

|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|              |
| 의 퇴 인   | 안철수 의원       |
| 회 답 일   | 2025. 7. 14. |
| 추 계 번 호 | 25F3566  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 신설

**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**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9조의9 신설 (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)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간 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의 20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</li> <li>- 적용기한: 2028.12.31.</li> </ul> |
| 2  | 안 제72조 제2항 추가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2항에 안 제29조의9 신설 규정을 추가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144조 추가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안 제29조의9 신설 규정을 제1항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대상과 제2항 이월공제의 적용순서에 추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9조의9 신설 (중소기업 퇴직연금 부담금 세액공제)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72조 제2항 추가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144조 추가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간 부담한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가 예상됨
  -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이 되는

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부담한 퇴직연금의 20%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함
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 -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<sup>1)</sup>는 고령화시대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2011.7.25. 전부개정됨
    - 확정급여형(DB)·기여형(DC) 퇴직연금 선택 및 혼합으로 설정하여 근로자 선택의 폭 확장, 개인형퇴직연금(IRP) 별도 운영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축적 도모
  -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<sup>2)</sup>는 30인 이하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지원,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2.4.14. 개정되어 도입
    - (제도설명)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이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으로,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(근로복지공단 적립)을 조성·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
    - (재정지원)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(DC)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(임금총액의 1/12 이상)이 사전에 결정되고, 월평균보수가 고시금액 미만(매년 최저임금 변동과 연계)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%를 지원
    - (수수료 할인) 다른 퇴직연금운용업체에 비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(사용자 및 가입자 부담금의 0.2% 이하), 2025년 푸른씨앗<sup>3)</sup> 신규 가입시 수수료 3년간 면제

[표 1] 퇴직연금·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·퇴직금제도 비교

|           | 퇴직연금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 | 퇴직금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적립운용      | 사의 금융기관 적립·운용       | 공동기금으로 조성    | 기업 사내유보    |
| 지급형태      |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       |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 | 일시금 형태     |
| 제도운영 주체   | 기업(DB), 근로자(DC/IRP) | 근로복지공단       | 기업 중심 의사결정 |
| 부담금 납입 주체 | 기업(DC/IRP 근로자 추가)   | 사업자(근로자 추가)  | 해당 없음      |

1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[시행 2012.7.26.] [법률 제10967호, 2011.7.25., 전부개정]  
 2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 [시행 2021.4.14.] [법률 제18038호, 2022.4.14., 일부개정]  
 3)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누리집 명칭

|        | 퇴직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                  | 퇴직금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퇴직급여수준 | DB: 평균임금×근속연수<br>DC/IRP: 부담금±수익률 | 부담금±수익률                      | 평균임금×근속연수                 |
| 세제혜택   | 기업: 비용인정(손금산입)<br>근로자: 과세이연      | 사업자: 비용인정(손금산입)<br>근로자: 과세이연 | 기업: 지급시 비용<br>근로자: 수령시 과세 |
| 위험요인   | 금융시장 상황 및 자산운용                   | 금융시장 상황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의 유동성 부족                |
| 기타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자 부담금 재정지원 등               | —                         |

자료: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누리집

- 최근 5년('20~'24)간 고용노동부의 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」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 차이가 상당함
  - 사업체 규모가 30~299인과 300인 이상은 퇴직연금 가입률은 70~75% 수준이나, 5인 미만은 18% 수준, 그 외는 전체 근로자 평균과 유사한 51% 수준

[표 2] 사업체 규모별 퇴직연금 가입률: 2020~2024

(단위: %)

|       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
|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전체 근로자  | 50.2 | 50.5 | 53.3 | 51.5 | 51.5 |
| 5인 미만   | 17.5 | 18.7 | 19.9 | 18.3 | 16.8 |
| 5~29인   | 50.2 | 50.0 | 50.3 | 48.7 | 48.7 |
| 30~299인 | 69.0 | 69.2 | 71.3 | 69.3 | 69.5 |
| 300인 미만 | 46.4 | 46.7 | 49.6 | 47.3 | 47.2 |
| 300인 이상 | 74.3 | 75.5 | 74.7 | 75.6 | 75.4 |

자료: 고용노동부, 「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」, 각 연도

- 개정안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수 감소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따른 부담금 상당액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, 정보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 -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날부터 3년간 부담하는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상당액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20%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자 하나,
  - 중소기업 중 일정한 기업과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상당액 중 일정한 금액 등 세액 공제 적용대상 및 요건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함으로써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  - 또한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 인원과 연간 임금수준, 기존 퇴직급여 제도 유무,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의사 또는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하여야 하나, 관련 정보가 부재함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# Ⅳ. 작성자

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2과  | 이수인 | 백경엽 |

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이수인 | 02-6788-4839 | suin2025@assembly.go.kr |